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21가단226767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7. 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06. 1. 25. 접수 제555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사 송인권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소외 C에게 220,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이 있는 채권자이고,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입니다.

2.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

피고는 소외 C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06. 1. 25.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하고 서울 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06. 1. 25. 접수 제5559호로 채권최고액 27,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합니다)를 경료한바 있습니다.

3. 피담보채권의 부존재 내지 소멸시효의 완성

피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현재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설령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2006. 1. 25.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점은 역수 상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4. 피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

피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또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5.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

원고는 소외 C은 무자력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가지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원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고자 합니다.

6. 결론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부동산의 표시

1동의건물의표시

서울 강서구 동

[도로명주소]

서울 강서구

전유부분의건물의표시

건물의번호:

구 조: 연와조

면 적: 3층 호 44.28㎡

대지권의표시 토지의표시

서울 강서구 대335㎡

대지권의 표시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331 분의 19.15

